

1. 개정이유

비상사태 시 해양수산분야 총무3대 기능 보장 및 동원자원 명확성 확보를 위해 중점관리대상물자·업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「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2조 조문 정비

○ 관리대상 물자 개정

- (삭제) 소관기관이 조정된 품목(소금)
- (추가)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민간 방제장비 및 자재

○ 관리대상 업체 개정

- (추가)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공단 및 해양오염방제업체,
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산하기관, 유관단체

* 항만공사(4)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해양환경공단, 수협중앙회, 수협은행

나. 제2조 조문 정비에 따른 하위 조항(제3조(권한의 위임), 별표)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「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 라. “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수산동물, 마른미역, 김, 소금”을 “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수산동물, 마른미역, 김”으로 하고, “마.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른 방제장비 및 자재”을 신설한다.

제2조제2호에 라. (「항만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), 마. (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), 바. (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및 해양환경관리업자), 사. (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)목을 신설하고 기존 제2조제2호라목을 제2조제2호아목으로, 제2조제2호마목을 제2조제2호자목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의 “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업체”를 “제2조제2호아목에 따른 업체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의 “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”를 “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”로 하고, “해상여객운송사업자·해상화물운송사업자·항만하역사업자·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예선업자”를 “해상여객운송사업자·해상화물운송사업자·항만하역사업자·항만운송관련사업자·예선업자·해양환경관리업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(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 업체의 범위) (생략) 1. 물자 가~다. (생략) 라.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수산동물, 마른미역, <u>김, 소금</u> 2. 업체 가~다. (생략) 라. 수산물을 생산·가공·보관· 판매 또는 수출·수입하는 업체 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) 마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수산분야 관련업체·단체 및 기관	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(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 업체의 범위) (현행과 같음) 1. 물자 가~다. (현행과 같음) 라.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수산동물, 마른미역, <u>김</u> 마. 「<u>해양환경관리법</u>」에 따른 <u>방제장비 및 자재</u> 2. 업체 가~다. (생략) 라. 「<u>항만공사법</u>」에 따라 설립된 <u>항만공사</u> 마. 「<u>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</u>」에 따라 설립된 <u>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</u> 바. 「<u>해양환경관리법</u>」에 따라 설립된 <u>해양환경공단</u> 및 <u>해양환경관리업자</u> 사. 「<u>수산업협동조합법</u>」에 따라 설립된 <u>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</u> 및 <u>수협은행</u> 아·자. (현행 라목 및 마목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략) 1.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어선 및 수산물 2.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업체 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) ② (생략) 1.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박 및 항만하역장비 2.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자·해상화물운송사업자·항만 하역사업자·항만운송관련사업자 <u>및 예선업자</u>. 다만,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업체는 제외한다.	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 1.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어선 및 수산물 2. 제2조제2호라<u>아</u>목에 따른 업체 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) ② (현행과 같음) 1.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박 및 항만하역장비 2. 제2조제2호가<u>가</u>목부터 다목까지 <u>및 바목의</u> 규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 사업자·해상화물운송사업자· 항만하역사업자·항만운송관련 사업자·<u>예선업자·해양환경관리 업자</u>. 다만,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업체는 제외한다.

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 12. 8.>

제2조(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)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물자와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 8. 4., 2015. 12. 23., 2022. 12. 8.>

1. 물자

- 가. 「선박법」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
- 나. 「항만운송사업법」에 따른 항만하역장비
- 다. 「어선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
- 라.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수산동물, 마른미역, 김, ~~소금~~(삭제)

마.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른 방제장비 및 자재

2. 업체

- 가. 「해운법」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
- 나. 「항만운송사업법」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
- 다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예선업자
- 라.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
- 마.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
- 바.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및 해양환경관리업자
- 사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
- 아. 수산물을 생산·가공·보관·판매 또는 수출·수입하는 업체
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)
- 자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수산분야 관련 업체·단체 및 기관

제3조(권한의 위임)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(이하 “중점관리대상자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 12. 8.>

1.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어선 및 수산물
2. 제2조제2호 아목에 따른 업체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)

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개정 2015. 1. 8.>

1.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박 및 항만하역장비
2.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규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·해상화물운송사업자·항만하역사업자·항만운송관련사업자 · 예선업자 · 해양환경관리업자. 다만,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업체는 제외한다.

제4조(자원조사)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·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. 8.>

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·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제5조(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)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제6조(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)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

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하며,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

②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의 사본을 관계 기관에 보내야 한다. 기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비축물자의 관리) ① 법 제13조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(이하 “비축물자”라 한다)는 신속히 사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사용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.

②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창고의 수용능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성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부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창고 밖에 저장할 수 있다.

③ 비축물자는 장기간 저장으로 인하여 그 물자의 내구연한(耐久年限)이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새 제품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비축물자는 매년 품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

제8조(비축물자의 실태보고)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

■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표]

자원조사의 실시기관 및 대상(제4조제1항 관련)

자원조사 실시기관	자원조사대상
1. 해양수산부장관	가. 제2조제2호 아목 에 따른 업체 중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특별법인 나. 제2조제2호 자목 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관련업체 · 단체 및 기관
2. 지방해양수산청장	가.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박 및 항만하역장비 나.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규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·해상화물운송사업자·항만하역사업자·항만운송관련사업자 · 예선업자·해양환경관리업자
3. 시·도지사	가.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어선 및 수산물 나. 제2조제2호 아목 에 따른 업체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)